



제 42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인증관련 부정행위 및 관련 벌칙 조항 구분〉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786호)

2025. 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인증관련 부정행위 및 관련 벌칙 조항 구분(안 제30조제1항제8호 개정 및 제30조제1항제8호의2 신설 등)	3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윤준병의원 등 14인

나. 제 안 일 : 2024. 11. 22.

다. 회 부 일 : 2024. 11.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기식품의 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유기식품 등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행위 또는 인증품을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기식품으로 인증받지 않은 제품에 ‘인증도형’뿐만 아니라 유기, 무농약, 친환경 문구 등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광고를 한 행위까지 포괄적으로 처벌 규정이 마련된 점과 이에 대한 형사소추 과정에서 사법부가 ‘인증도형’ 또는 ‘인증’이란 문구를 사용하지 않은 사례에 대하여 불처분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단속활동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자 및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

여 시정조치를 2회 이상 받은 자를 명확히 명시하여 원활한 친환경인
증 단속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등).

Ⅲ. 검토의견

1. 인증관련 부정행위 및 관련 벌칙 조항 구분(안 제30조제1항제8호 개정 및 제30조제1항제8호의2 신설 등)

가. 개정안의 내용과 취지

현행법 제30조제1항제8호에서는 ① 미인증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는 행위, ② 미인증품을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행위, ③ 인증품을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상기 ② 미인증품을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행위를 별도의 호(제8호의2)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안 제8호의2를 위반하여 시정조치를 2회 이상 받은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0조(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에 따른 인증심사, 재심사 및 인증 변경승인, 제21조에 따른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 및 재심사 또는 제2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갱신을 받는 행위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에 따른 인증심사, 재심사 및 인	제30조(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① ----- ----- ----- 1. ~ 7.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증 변경승인, 제21조에 따른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 및 재심사를 하거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 1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는 행위 2.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과 제품을 판매하는 진열대에 유기표시, 무농약표시, 친환경 문구 표시 및 이와 유사한 표시(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를 포함한다)를 하는 행위 3. 인증품에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는 행위 4. 제20조제1항에 따른 인증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인증 갱신을 신청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하여 주는 행위 5. 인증품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 등을 섞어서 판매하거나 섞어서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6. 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에 따른 제품임을 알고도 인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7. 인증이 취소된 제품임을 알고도 인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8.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으로 <u>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유기, 무농약, 친환경 문구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문구를 사용한 광고를 포함한다)하는 행위 또는 인증품을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u> <u><신 설></u>	8. ----- ----- -인증받은----- ----- 8의2.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u>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유기, 무농약, 친환경 문구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문구를 사용한 광고를 포함한다)하는 행위</u>

현행	개정안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친환경 문구와 유사한 표시의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60조(벌칙)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6조제1항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업무를 하거나 제44조제1항에 따라 공시기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공시업무를 한 자 - 제26조제3항(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인증업무를 하였거나 제44조제3항에 따라 공시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공시업무를 한 자 - 제29조제1항(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인증업무를 하거나 제47조제1항에 따라 공시기관의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공시업무를 한 자 - 제30조제1항제1호(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에 따른 인증심사, 재심사 및 인증 변경승인, 제21조에 따른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 및 재심사 또는 제2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갱신을 받은 자 - 제30조제1항제1호의2(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에 따른 인증심사, 재심사 및 인증 변경승인, 제21조에 따른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 및 재심사를 하거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자 - 제30조제1항제1호의3(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은 자 - 제30조제1항제2호(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	② (현행과 같음) 제60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 10.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11의2. 제48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에 따른 공시, 재심사 및 공시 변경승인, 제39조제2항에 따른 공시 갱신 또는 제44조제1항·제3항에 따른 공시기관의 지정·갱신을 받은 자 12. 제48조제2호를 위반하여 공시를 받지 아니한 자재에 공시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공시를 받은 유기농어업자재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 등을 한 자 13. 제48조제5호를 위반하여 공시를 받지 아니한 자재에 공시의 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것임을 알거나 공시를 받은 유기농어업자재에 공시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한 것임을 알고도 공시를 받은 유기농어업자재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한 자 14. 제48조제7호를 위반하여 공시를 받지 아니한 자재를 공시를 받은 유기농어업자재로 광고하거나 공시를 받은 유기농어업자재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거나 공시를 받은 자재를 공시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자 15. 제48조제8호를 위반하여 허용물질이 아닌 물질이나 제37조제4항에 따른 공시기준에서 허용하지 아니하는 물질 등을 유기농어업자재에 섞어 넣은 자 ③ (생략)	11의2. ~ 1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관계기관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관한 포괄적 부정행위 금지 조항에 대한 벌칙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문 정비가 필요하므로, 개정안에 동의함.

다. 검토의견

현행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은 유기식품등¹⁾ 인증의 실시 근거 등을 규정²⁾하고 있고, 동법 제30조³⁾는 유기식품등의 인증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동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⁴⁾은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유기”(Organic)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의 비옥도를 유지하여 환경을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허용물질을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제19조제2항의 인증기준에 따라 유기식품 및 비식용유기가공품(이하 “유기식품등”이라 한다)을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일련의 활동과 그 과정을 말한다

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유기식품등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기식품등의 산업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기 위한 유기식품등의 인증대상과 유기식품등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에 따른 인증심사, 재심사 및 인증 변경승인, 제21조에 따른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 및 재심사 또는 제2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갱신을 받는 행위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에 따른 인증심사, 재심사 및 인증 변경승인, 제21조에 따른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 및 재심사를 하거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

1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는 행위

2.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과 제품을 판매하는 진열대에 유기표시, 무농약표시, 친환경 문구 표시 및 이와 유사한 표시(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를 포함한다)를 하는 행위

3. 인증품에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는 행위

4. 제20조제1항에 따른 인증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인증 갱신을 신청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하여 주는 행위

5. 인증품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 등을 섞어서 판매하거나 섞어서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6. 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에 따른 제품임을 알고도 인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7. 인증이 취소된 제품임을 알고도 인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8.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유기, 무농약, 친환경 문구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문구를 사용한 광고를 포함한다) 하는 행위 또는 인증품을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친환경 문구와 유사한 표시의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등의 인증 실시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같은 조 제5항⁵⁾은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등의 인증과 관련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동법 제30조를 준용하여 이 경우 “유기식품등”은 “무농약농산물 및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등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⁶⁾에 따라 현행법 상 “친환경농산물”은 유기식품등(① 유기농산물, ② 비식용유기가공품⁷⁾)과 ③ 무농약농산물 및 ④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임.

4)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기 위한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대상과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5)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 등) ⑤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 등에 관하여는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식품등”은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무항생제수산물등”으로, “제한적으로 유기표시를 허용한 식품”은 “제한적으로 무농약표시를 허용한 식품”으로 본다.

6)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친환경농어업”이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농어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및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농산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수산물”이란 친환경농어업을 통하여 얻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유기농수산물

나. 무농약농산물

다.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이하 “무항생제수산물등”이라 한다)

7)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비식용유기가공품”이란 사람이 직접 섭취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하여 유기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여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되는 가공품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 용기·포장,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은 제외한다.

【 친환경 농산물 체계】

친환경 농산물			
유기식품등		인증 관련 부정행위 시 유기식품등으로 간주	
유기농산물	비식용유기가공품	무농약농산물	무농약원료 가공식품

【 유기 인증 및 무농약 인증 비교 】

구 분	유기	무농약
일반기준	- 경영기록의 작성 보관 (최근 2년) - 재배포장에 관행농업을 병행불가 - 친환경 의무교육 이수 (2년마다)	- 경영기록의 작성 보관 (최근 1년) - 재배포장에 관행농업을 병행불가 - 친환경 의무교육 이수 (2년마다)
재배포장, 용수, 종자	- 재배포장 오염우려 없을 것 - 합성농약성분 0.01mg/kg 이하일 것 - 매년 토양검정을 통해 토양비옥도 관리 - 비의도적 오염 방지대책 마련 - 재배포장은 최근 1년간 인증기준이 없을 것 - 재배포장은 처음 수확하기 전 3년간의 전환기간을 거칠 것(전환기간 동안 유기방식으로 재배) - 버섯류, 싹을 틔워 직접먹는 농산물 및 어린잎채소의 재배 배지 - 합성농약성분 0.01mg/kg이하일 것 - 배지의 조성이 산림, 자연상태에서 자생하는 식물 및 그 부산물로 조성 (화학비료 성분 배지조성 불가) - 종자:묘는 최소한 1세대 또는 다년생인 경우 한 번의 생육기동안 유기방식으로 재배된 것	- 재배포장 오염우려 없을 것 - 합성농약성분 0.01mg/kg 이하일 것 - 매년 토양검정을 통해 토양비옥도 관리 - 비의도적 오염 방지대책 마련 - 재배포장은 최근 1년간 인증기준이 없을 것 - 재배포장은 전환기간 없음 - 버섯류, 싹을 틔워 직접먹는 농산물 및 어린잎채소의 재배 배지 - 합성농약성분 0.01mg/kg이하일 것 - 종자:묘는 최소한 1세대 또는 다년생인 경우 한 번의 생육기동안 무농약 방식으로 재배된 것
재배방법	- 화학비료, 합성농약 사용불가 - 돌려짓기(윤작) 필수 - 가축분뇨 퇴·액비는 유기축산농장, 경축순환농장, 무항생제축산농장, 동물복지축산농장에서 유래한 것을 사용	- 화학비료는 권장사용량의 1/3 이하 사용, 합성농약은 사용불가 - 돌려짓기(윤작) 권장 - 가축분뇨 퇴·액비는 일반농장 유래한 것도 사용가능
생산물 품질관리	- 청결유지, 외부오염 방지 - 다른 인증 및 일반농산물과 구분관리 - 병·해충관리를 위해 기계적·물리적 및 생물학적 방법 사용 - 비의도적 원인으로 합성농약이 농산물에서 검출시 MRL의 1/20이하 이거나 MRL이 없는 경우 0.01mg/kg	- 청결유지, 외부오염 방지 - 다른 인증 및 일반농산물과 구분관리 - 병·해충관리를 위해 기계적·물리적 및 생물학적 방법 사용 - 비의도적 원인으로 합성농약이 농산물에서 검출시 MRL의 1/20이하 이거나 MRL이 없는 경우 0.01mg/kg

구 분	유 기	무 농 약
기 타	- 콩나물, 숙주나물 등 싹을 틔워 직접 먹는 농산물과 어린잎 채소는 그 원료종자가 유기농산물이어야 한다. - 토양을 기반하지 않는 농산물은 수분 공급 외에는 어떠한 외부물질도 투입이 금지됨 - 식물공장에서 생산된 농산물 아닐 것	- 수경재배 및 양액재배 방식은 순환식 등으로 하여 배양액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 콩나물, 숙주나물 등 싹 틔워 적집 먹는 농산물과 어린잎 채소는 그 원료가 유기 또는 무농약 - 싹을 틔워 직접 먹는 농산물: 국내산으로 잔류농약은 불검출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 친환경농업과(2025. 1. 22.) 제출

현행법 제30조제8호는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및 무농약원료가공 식품 등을 포함하는 개념인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과 관련하여 ① 미인증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는 행위, ② 미인증품을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행위, ③ 인증품을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① 미인증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한 사례

① 온라인쇼핑몰에 무농약인증을 받지 않은 딸기를 판매하면서, 무농약인증마크와 허위 인증번호를 표시하여 광고하는 사례

총 상품 ▾ 농산물 ▾ 과일 ▾ 딸기(총 27개) ▾ 다른상품보기

GAP인증 논산 설향 딸기 800g 가정용 선물용 [원산지: 국산(충청남도 논산시)]

29,000원
5% 무료배송

최대 적립 포인트	3,050원 ?
기본적립	290원
네이버 멤버십으로 결제 시 >	1,450원
네이버페이 미니 결제 시 최대 적립 >	580원
멤버십 추가 적립	1,160원
최대 5% 적립 시작하기 >	

슈퍼적립! 멤버십 회원이라면 10% 더 적립 >

영수증발급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발급

A/S 안내
상세정보 확인

인증정보
[친환경]무농약농산물_국가인증·농림축산식품부
0130000 인증번호확인
구매한 인증번호를 꼭 확인하세요.
* 해당 인증정보는 판매자가 등록한 것으로 등록 정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허위번호 기재

- ② 온라인 쇼핑몰에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고**, GAP인증만 받은 생산자의 포도를 판매하면서, 'GAP **친환경 인증**'를 문구를 사용하여 친환경 인증품인 것처럼 거짓·허위 광고한 사례



[GAP 친환경 인증] 상성랜드 고당도 새콤달콤 씨없는 국내산 델라웨어 포도 [원산지:국산]

85% 99,000 - 13,500원

배송카드 결제시 최대 140원 추가할인 ?

쿠폰받기 >

기본적립 135원

네이버 현대카드로 결제 시 > 675원

네이버페이머니결제 시 최대 적립 > 269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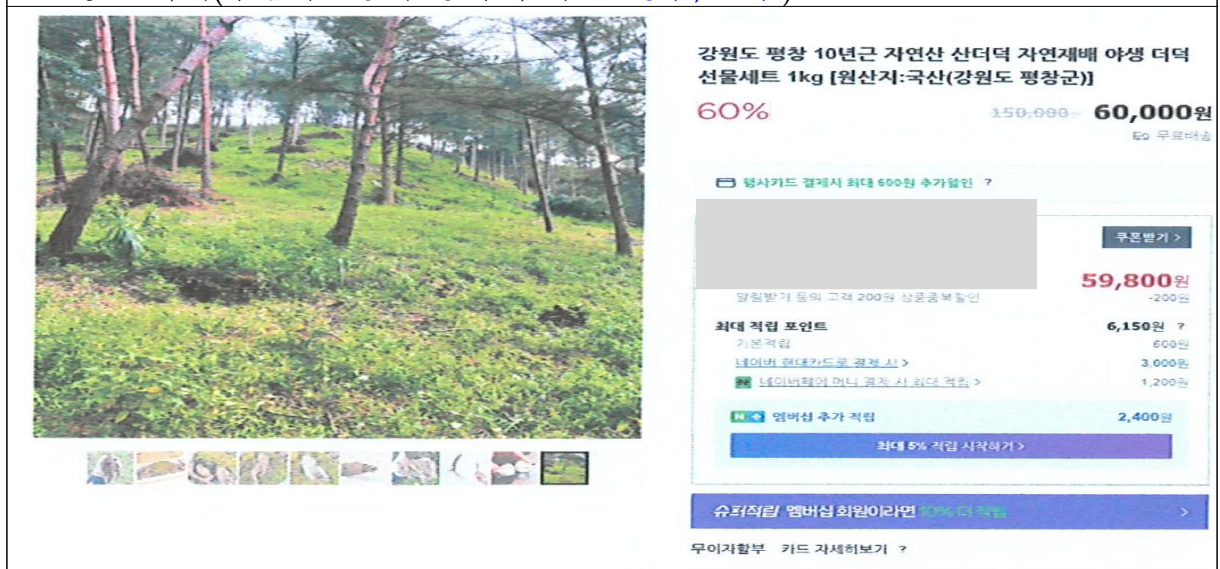
멤버십 추가 적립 540원

최대 5% 적립 시작하기 >

슈퍼직립! 멤버십 회원이라면 10% 더 적립 >

무이자할부 카드 자세히보기 ?

- ③ 온라인 쇼핑몰에 더덕을 판매하면서 무농약**인증마크**와 **인증번호**를 표시하여 광고하였으나, 인증번호를 조회하면, 해당 품목(**더덕**)은 무농약인증을 받지 않은 사례(무농약인증서 등록 품목: **산양삼, 인삼**)



강원도 평창 10년근 자연산 산더덕 자연재배 야생 더덕 선물세트 1kg [원산지:국산(강원도 평창군)]

60% 150,000 - 60,000원

배송카드 결제시 최대 600원 추가할인 ?

쿠폰받기 >

당첨받기 등익 고객 200원 상품증복할인

최대 적립 포인트 6,150원 ?

기본적립 600원

네이버 현대카드로 결제 시 > 3,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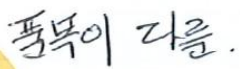
네이버페이머니결제 시 최대 적립 > 1,200원

멤버십 추가 적립 2,400원

최대 5% 적립 시작하기 >

슈퍼직립! 멤버십 회원이라면 10% 더 적립 >

무이자할부 카드 자세히보기 ?

무게	1kg	특징	비세척
수확시기	연중생산		
영수증발급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발급		
A/S 안내	상세정보 확인		
인증정보	 [친환경]무농약농산물_국가인증 -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11304759 인증번호확인 > 구매한 인증번호를 꼭 확인하세요.  [농축산물]우수농산물(GAP)_국가인증 -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1020752 구매한 인증번호를 꼭 확인하세요.		
+ 해당 인증정보는 판매자가 등록한 것으로 등록 정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② 미인증품을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한 사례

- ① 온라인쇼핑몰에 친환경인증을 받지않은 공심채를 판매하면서,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 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친환경인증품으로 오인하도록 광고하는 사례

어떤 면에서
우수한가요?

합안독방길공심채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합니다.
개구리를 이용해 청벌레, 메뚜기, 달팽이
들을 잡아먹어 약을 치지 않고
공심채를 튼튼하게 재배 합니다.

GAP인증

- ② 온라인쇼핑몰에 친환경인증을 받지않은 새싹 무순을 판매하면서, ‘**친환경 새싹 무순**’ 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판매되는 새싹 무순이 친환경 인증품으로 오인하도록 광고하는 사례

친환경 수경재배 새싹 무순 150g [원산지:국산(경기도 안산시)]

1,100원
₩0 배송비 3,500원

최대 적립 포인트 440원 ?

기본 적립	11원
네이버 현대카드로 결제 시 >	55원
신한카드 결제 시 >	21원
멤버십 추가 적립	44원

최대 5% 적립 시작하기 >

슈퍼저렴! 멤버십 회원이라면 10% 더 적립 >

친환경 새싹 무순 150g

- ③ 온라인으로 강황가루(가공식품)를 판매하면서, ‘국산 무농약’이라는 광고문구를 사용하였으나, 해당제품은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인증’을 받지 않은 가공식품으로 인증받지 않은 가공식품에 인증받은 것처럼 유사한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한 사례



③ 인증품을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사례

- 온라인 쇼핑몰에 미니파프리카를 판매하면서 '무농약 친환경 미니파프리카'로 광고 표시하였으나, 실제 판매되는 인증품은 '유기농인증'을 받은 품목인 사례

무농약 친환경 미니파프리카 for 이유식 (세두리꾸러미)
[원산지:국산(충청남도 홍성군)]

9,000원

390원 ?

기본적립 90원

TIP. 포인트 더 받는 방법 +최대 810원

신규회원	최대 5% 적립, 무료배송	360원
신규회원	신입비 할인까지 최대 5%	450원
신규회원	신입비 할인까지 최대 5%	180원

5% 놓치고 있는 5% 적립 포기하시겠어요?

세두리 꾸러미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홍성로 100
유기농
미니 파프리카
유 7113100906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 친환경농업과(2025. 1. 22.) 제출

이와 관련하여 동법 제60조제2항제11호는 상기 부정행위를 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인증품 및 미인증품 광고 관련 처벌 비교 】

구 분	광고 행위	처벌 여부
미인증품	① 인증품으로 광고	○
	② 인증품으로 오인될 수 있게 광고	○ *고의성 입증 어려움
인증품	③ 인증내용과 다르게 광고	○
	인증내용대로 광고	X

그런데, 상기 ② 미인증품을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 사전적으로 ‘유기농’은 ‘화학비료나 농약을 쓰지 아니하고 유기물을 이용하는 농업방식’을 의미⁸⁾하는바,

① ‘유기농’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친환경농어업법 제19조에 따른 ‘인증’을 취득했다고 광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고, ② ‘유기농’이라는 단어에 ‘유기농 인증’ 또는 ‘유기농 인증품’이라는

8)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유기”(Organic)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의 비옥도를 유지하여 환경을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허용물질을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제19조제2항의 인증기준에 따라 유기식품 및 비식용유기가공품(이하 “유기식품등”이라 한다)을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일련의 활동과 그 과정을 말한다.

4. “유기식품”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의 식품과 「수산물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수산식품 중에서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유기농수산물과 유기가공식품(유기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 및 수산식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뜻이 내포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며, ③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유기농’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 외에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였음을 알 수 있는 증거는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1심(2022고정36)에서 무죄가 선고된바 있음.

또한, 이후 청주지방법원의 항소심(2023노135)에서도 ① 현행법 상 단순히 ‘유기’라는 문구를 사용하는 것 자체에 가벌성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② 피고인이 ‘유기농’이라는 글자 외에 별도의 인증 표시나 인증품으로 오인될만한 도형이나 특정 문구를 외부에 표시한 바 없고, ③ 죄형법정주의나 유추 해석 금지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음.

즉, 별도의 인증 관련 표시 없이 단순히 ‘유기’ 또는 ‘유기농’이라는 문구를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곧바로 유기농인증 제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사법부의 일관된 판단으로 보임.

【 제30조제8호 위반 관련 법원 판결 】

청 주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노135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지원에관한법률위반
원 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3. 2. 1. 선고 2022고정36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1. 15.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인증을 받지 아니한 블루베리에 대하여 ‘유기농 블루베리’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한 것은 마치 위 블루베리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이라 한다)상 ‘인증품’에 해당하는 것처럼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행위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친환경농어업법 제60조 제2항 제11호는 같은 법 제30조 제1항 제8호(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유기, 무농약, 친환경 문구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문구를 사용한 광고를 포함한다)하는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점, ② 사전적으로 ‘유기농’은 ‘화학비료나 농약을 쓰지 아니하고 유기물을 이용하는 농업방식’을 의미하는데(친환경농어업법 제2조 제3호는 “유기”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의 비옥도를 유지하여 환경을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허용물질을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제19조제2항의 인증기준에 따라 유기식품 및 비식용유기가공품(이하 “유기식품등”이라 한다)을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일련의 활동과 그 과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유기농’이라는 단어를 위 친환경농어업법 제19조 및 위법 시행령에 정한 행정절차에 따른 ‘인증’과 동일하게 보는 것은 무리가 있고, ‘유기농’이라는 단어에 ‘인증’ 또는 ‘인증품’이라는 뜻이 내포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며, 그와 같이 해석하는 사회일반의 관행이 성립한 것으로 볼 자료도 없는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유기농’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외에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였음을 알 수 있는 증거는 없는 점, ④ 친환경농어업법 제30조 제1항 제8호의 “(유기, 무농약, 친환경 문구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문구를 사용한 광고를 포함한다)”는 규정은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

도록 하는 광고 중에서 위와 같은 문구를 포함한 것을 처벌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친환경농어업법 제30조 제1항 제8호는 인증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보호하고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보장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고, 단순히 “유기”라는 문구를 사용하는 것 자체에 가벌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나.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하므로,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기재된 친환경농어업법 제60조 제2항 제11호, 제30조 제1항 제8호의 구성요건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유기, 무농약, 친환경 문구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문구를 사용한 광고를 포함한다)하는 행위 또는 인증품을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이다.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유기농’이라는 글자 이외에 정부가 정한 인증표시나 인증품으로 오인될 만한 도형이나 특정문구를 추가로 외부에 표시한 바 없고, 피고인의 ‘유기농’ 문구가 인증사업자가 쓰는 ‘유기농수산물등 표시’와 그 형태, 모양, 표현방식에 있어서 오인이나 혼동을 유발할 우려가 없는 등 “유기”라는 문구를 사용하더라도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유추해석 금지 및 형벌법규의 엄격한 해석 원칙에도 부합한다.

4.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헌법 제13조제1항⁹⁾에서 규정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의 취지와 형법 제13조 및 제14조¹⁰⁾에 따라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한 과실에 대하여는 처벌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이에 따른 사법부의 판결을 고려할 때,

‘인증품’이라는 표시 또는 ‘인증도형’ 등을 적시하여 명확히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인증품으로 오인할만한 방식으로 광고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유기농’ 또는 ‘친환경’ 등의 표현을 한 광고에 대하여 이를 현행법 제60조제2항제11호에 따라 처벌하기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임.

그런데, 일부 소비자의 경우 이러한 광고를 보고 해당 제품이 관련 인증을 취득한 것으로 오해할 가능성도 상당 부분 있을 것으로 보임.

예를 들어, ‘유기농 블루베리’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하는 판매자는 ‘유기농 인증이라는 문구’ 또는 ‘유기농 인증 도형’을 사용하여 광고하지 않았기에 현행법 상 처벌을 피할 수 있음.

그러나, 소비자는 해당 블루베리를 ‘유기농 인증을 받은 블루베리’로 오해하여 인식할 소지가 있는바, 이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9) 「헌법」

제13조 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10) 「형법」

제13조(고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과실)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注意)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이에 개정안은 ‘미인증품’을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행위를 별도의 호(제8호의2)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한편,

미인증품을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한 경우 시정조치를 1회 명하고, 시정조치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고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하려는 것임.

이는 사법기관에서 유기농, 무농약 등의 단어는 누구나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어인 만큼 인증을 취득했다는 의미로 사용하지 않아 고의성이 없다고(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점을 고려하여 시정조치 명령을 위반(시정조치 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한 경우 고의성이 있다고 간주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이처럼 개정안은 미인증품을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현행법 상 처벌 규정 미비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현행법 상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의 근거¹¹⁾는

1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인증의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인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1조제7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전업(轉業), 폐업 등의 사유로 인증품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 지체 없이 인증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인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있는 반면, 미인증품을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한 자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의 법적 근거가 없는바,

안 제60조제2항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같은 항 제8호의2를 위반하여 시정조치를 2회 이상 받은 자”의 경우에도 해당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실정임.

【 현행법 상 시정조치 명령 근거 조문 】

인증품에 대한 시정명령	미인증품 허위 광고 등에 대한 시정명령
제24조(인증의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u>인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u>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1조제7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전업(轉業), 폐업 등의 사유로 인증품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근거 없음 → 시정명령 근거 신설 필요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세부기준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따라서,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미인증품을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한 자’에 대한 시정명령(이하 “시정명령”이라 한다)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추가하여 신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2차적으로는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근거를 개정안과 같이 마련하여야 할 것임.

다만, 안 제60조제2항제11호의 “같은 항 제8호의2를 위반하여 시정조치를 2회 이상 받은 자”를 유사 입법례를 고려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로 수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유사 입법례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① <u>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u>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제7조(시정조치) ① <u>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u> 1.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2.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3. 정정광고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17조(벌칙)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 2. 제6조제3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	1. <u>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u> 2. <u>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u> 3. <u>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u> 4. <u>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u> 5. <u>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u> 9. <u>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이 아닌 물품의 상호, 상표 또는 용기·포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해당 물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u>
제14조(시정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3.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
제16조(영업정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 중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u>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u>	3. 제9조제4항에 따른 중지명령을 위반하거나 <u>제14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u>

또한, 안 제30조제1항제8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으로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의 경우 수식하는 범위에 있어 해석이 모호한 측면이 있을 수 있음.

따라서,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¹²⁾을 고려할 때, 형벌의 구성요건의 경우 법률에 보다 명확히 규정될 필요가 있는바,

안 제30조제1항제8호를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

12) 법제기준과 실제, 국회사무처 법제실 2024.

명확성의 원칙은 입법자가 법률을 제정할 때 명확한 용어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수범자가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이고 무엇이 허용되는 행위인지 미리 알 수 있도록 하고, 법 집행자가 객관적 판단지침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의적인 법 집행을 예방하고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명확성의 원칙은 특히 죄형법정주의나 조세법률주의가 지배하는 영역에서는 더 높은 명확성이 요구된다.

고하거나 인증품을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로 수정하거나,

이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①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과 ② 인증품을 각각의 호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26